

수업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사과정의 교과목 개설) ①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은「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에 따라 개설한다.

②학과(학부)(이하 “학과”라 한다)별 전공과목은 대학(학과)별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영역별 개설범위를 지켜 개설하여야 한다.

1. 전공핵심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00%~150%
2. 전공일반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50%~200%(의예과/의학과 100%)
3. 실험실습영역과목: 학과별 이수학점수의 110%~150%

③<삭 제>

④선택과목은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및 전공과목과는 별도로 개설한다.

⑤<삭 제>

⑥전공과목을 균형영역의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양인정전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3조(전공과목 개설학점 산정)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를 학점으로 적용하는 학과의 개설학점 누계 산정 방법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 1.<삭 제>
- 2.<삭 제>
- 3.<삭 제>
- 4.<삭 제>

제4조(대학원과정의 교과목 개설) ①<삭 제>

② 연간개설강좌(분반)는 학생 수 변동을 고려하여 일반대학원은 대학(학과)단위로, 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은 대학원별로 산정한다.

③부설연구기관 등에서 연구비지원 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연구성과와 관련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조(학사과정 교과목의 반 편성 기준) ①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의 과목별 분반 수는 입학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학인원을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의 반 편성 기준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②전공과목의 과목별 분반 수는 재학인원(제1전공 및 복수전공)을 별표2의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총장은 강좌별 수강정원을 수강신청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강좌별 수강정원은 별표 2의 학사과정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 또는 강의실 정원 미만으로 책정할 수 없다.

제6조(대학원과정 교과목의 반 편성 기준) 대학원과정은 4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한다. 다만, 국제어수업의 경우 20명 단위로 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반 편성 기준인원의 하향 조정) 총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과목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반 편성 기준인원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과목 분반 및 합반) ①총장은 별표 2의 교과목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에 따라 분반 개설하여야 한다.

②수강신청기간 종료 후 교과목별 전체 분반의 수강인원 합이 다음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총장은 이를 합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분반 수는 동일 캠퍼스에 개설된 것에 한한다.

1. 기준 = (교과목별 반편성 기준인원) × (분반 수-1)

③<삭 제>

제9조(교과목 폐반) ①개강 후에 수강인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총장이 폐반한다.

1. 학사과정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 「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의 폐반 기준에 따른다.
2. 학사과정 전공과목 : 별표 3의 전공교육과정 폐반 기준에 따른다.
3. 대학원과정(학·석공통과목 및 석사과목) : 3명 이하
4. 대학원과정(석·박공통과목 및 박사과목, 학·석·박공통과목) : 2명 이하

②폐반시기, 방법, 폐반강좌 수강생의 추가 수강신청 등 폐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10조(폐반 제외) 총장은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폐반을 제외할 수 있다.

1. 학사과정 전공핵심과목, 의예과·의학과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
2.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국제어수업
3. 대학의 인문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과목

제11조(수강인원 계산) 수강인원 계산에는 학사과정 개설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수강하는 대학원과정 학생과 학위과정 연계차원에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원과정 개설과목을 수강하는 학사과정 학생을 모두 포함한다.

제12조(강의시간 및 강의실 배정) ①전임교원의 1일 강의시간은 주·야간을 합하여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수업시간배정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 지침에 따른다.

③교과목 담당 교강사(이하 “교강사”라 한다)는 수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학기 초에 지정된 수업시간 및 강의실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학사과정 수업의 강의실은 별표 2의 학사과정 교과목 유형별 반 편성 기준인원에 적합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삭 제>

제14조(수업계획서 작성 및 전산입력) 교강사는 전자시간표 공시 전 지정기간 내에 행정시스템을 통해 수업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강신청 기간) ①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캠퍼스, 학위과정 및 등록(예정)학기수에 따라 수강신청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총장은 장애학생에게 수강지도 및 수업편의를 제공하며, 장애학생의 수강신청 기간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휴·보강) ①교강사는 휴강사유 발생 시 사전에 총장에게 행정시스템을 통해 휴강신청 및 보강계획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수강 학생들에게 휴강 및 보강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여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총장은 휴강신청 및 보강계획 접수 후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보강실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정규학기(1,2학기)의 경우 학기 중에 있는 정기휴업일은 휴강하나 반드시 학기 중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또는 책임학점이 적용되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대학원과정 수업: 온라인보강과 오프라인 보강 중 교강사가 자율 선택하여 시행
2. 강사 또는 책임학점이 적용되지 않는 비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대학원과정 수업: 온라인보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3. 모든 교강사가 담당하는 학사과정 수업: 온라인보강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함

제17조(국제어수업) ①각 학과는 별표 4에 따라 국제어수업을 개설하여야 한다.

②국제어수업은 수업의 모두를 국제어로 진행하여야 한다.

③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중 글로벌영역, 기초인문사회과학영역, 기초자연과학영역(단, 실험실습과목은 제외)은 국제어수업으로 개설하여야 한다.

④국제어수업으로 지정된 영역 이외의 과목 중 필요한 경우 국제어수업전용과목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⑤국제어수업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과목별로 PD(Program Director)교수를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계절수업) ①계절수업은 방학기간 중 단기집중교육에 적합한 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 위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공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개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별도 기준에 따라 선발된 수강생을 대상으로 전임교수가 지도하는 연구학점 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

③계절수업 수강료 납부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할 수 있다.

1. 본인사망, 자퇴

2. 질병,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계절수업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④ 계절수업으로 개설되는 강좌는 온라인수업으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대단위수업) ①총장은 교육목적 또는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교과목을 대단위수업으로 개설할 수 있으며, 수강신청 전에 대단위수업임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대단위수업을 담당한 교강사에게는 별도로 정한 대단위강의료를 지급한다.

③대단위수업은 강의저장수업 유형으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성균인성·교양·기초과목의 대단위수업 운영은「성균인성·교양·기초교육과정편성및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20조(성적공시 및 제출) ①개설된 모든 수업은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성적공시하여야 한다.

②교강사는 성적공시기간에 제출된 성적관련 학생의견을 확인하여 성적 확정 후 최종 성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강의평가) ①개설된 모든 수업에 대해 매 학기 2회(중간, 기말) 학사일정에 정한 기간에 강의평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생의 수업선택을 위해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②강의평가 실시, 공개 등 강의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정한다.

제22조(대학(학과)별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 설정) ①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는 총장이 해당 학문단위와 매 학년도 마다 협의하여 설정한다.

② 연간 전공과목 개설규모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지침으로 설정한다.

③<삭 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수업운영에 관한 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3학년도 이후 수업편성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2학년도 수업 편성 및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4학년도 이후 수업편성 및 운영에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2013학년도 수업 편성 및 운영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